

전주대학교 입학사정관 운영규정

(제정 2010. 9. 14.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 입학하는 학생의 학업능력과 잠재력, 소질, 인성, 개인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‘전임사정관’이란 입학사정관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전담하기 위하여 총장이 임용한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12.8.23>
2. ‘위촉사정관’이란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직원 및 외부전문가 중에 총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12.8.23., 2015.6.11.>

제3조(입학사정관의 분류) ① 입학사정관은 ‘전임사정관’, ‘위촉사정관’으로 분류한다.

② 전임사정관은 채용사정관, 전환사정관, 교수사정관을 말한다. <개정 2012.8.23>

1. ‘채용사정관’이란 전임사정관으로 총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.
2. ‘전환사정관’이란 본교 교직원중에서 전임사정관으로 발령받은 사람을 말한다.
3. ‘교수사정관’이란 입학사정관의 업무를 위하여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.

③ 위촉사정관은 교수위촉사정관, CA위촉사정관, 외부위촉사정관을 말한다. <개정 2012.8.23>

제2장 임용

제4조(임용) 입학사정관은 입학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용한다. <개정 2014.1.1.>

제5조(채용절차) ① 채용사정관은 공개경쟁을 통해 학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고, 그 절차는 일반직원 채용 절차에 준한다.

② 전환사정관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기존 직원을 전임사정관으로 전환하여 임용할 수 있다. <신설 2012.8.23>

③ 교수사정관은 입학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 <신설 2012.8.23., 2014.1.1.>

④ 교수위촉사정관과 CA위촉사정관은 본교 단과대학별로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며, 외부위촉사정관은 입학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2.8.23., 2014.1.1.>

제6조(자격) ① 전임사정관은 박사급, 석사급, 학사급 등으로 각각 해당 학위 소지자를 기본으로 한다. 다만, 교수사정관은 본교 전임교원 이상이어야 한다. <개정 2012.8.23>

② 위촉사정관은 본교 전임교원이나 석사 학위 이상 소지한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이어야 한다.
<개정 2012.8.23>

제3장 운영

제7조(역할) 입학사정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생부종합전형의 기획 및 개발 <개정 2015.6.11.>
2. 학생부종합전형의 입학 사정업무 <개정 2015.6.11.>
3.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한 고교자료수집 및 분석 <개정 2015.6.11.>
4.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생 자료 분석 <개정 2015.6.11.>
5. 학생부종합전형 홍보 및 상담업무 <개정 2015.6.11.>
6. 국내·외 입학정보수집 연구
7. 학생부종합전형 및 교내 입시분석 연구 <개정 2015.6.11.>
8. 연구과제 수행 <개정 2015.6.11.>
9. 전임사정관 교육훈련
10. 위촉사정관 위촉 및 교육훈련
11. 학생부종합전형 예비합격생 및 재학생 추수지도 지원 <개정 2015.6.11.>
12. 고교연계 사업 운영

제8조(기밀유지) 입학사정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본교의 입학 관련 정보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9조(공정성·신뢰성) 입학사정관은 학생부종합전형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6.11.>

제10조(위원회 및 자문단 설치) ① 학생부종합전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‘학생부종합전형 운영위원회’를 둔다. <개정 2015.6.11., 2017.4.29.>

②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‘학생부종합전형심의위원회’를 둔다. <신설 2013.5.7.> <개정 2015.6.11.>

③ 본교 입학전형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고교-대학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고교교사 및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한다. <개정 2012.8.23., 2015.6.11.>

제10조의2(퇴직) 입학사정관은 「고등교육법 제34조의3(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)」에 따라 퇴직 후 3년 동안 사교육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며, 취득 정보를 외부 유출 및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. <신설 2015.6.11.>

제11조(준용) 입학사정관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에 따른다.

이 규정은 201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